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4 선고 2015가합2012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영우씨에스브이

2.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

변론 종결2015. 7. 24.

판결 선고2015. 9. 4.

주 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영우씨에스브이는 원고에게 325,959,564원 및 그 중 10,118,991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42,606,668원에 대하여는 2013. 2. 12.부터, 70,337,906원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46,755,374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112,482,447원에 대하여는 2013. 5. 20.부터, 43,658,178원에 대하여는 2013. 5. 23.부터 각 2015. 5. 28.까지는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영우씨에스브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영우씨에스브이가, 원고와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은 피고 주식회사 영우씨에스브이와 연대하여 325,959,564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동법 제384조).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인데(동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동법 제424조). 한편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나(동법 제447조), 신고기간 후에도 최후배당 제외기간 만료 전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동법 제453조),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때에는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된다(동법 제462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영우씨에스브이(이하 '피고 영우'라 한다)와 매출채권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에스에이치바이오'라 한다)는 2012. 11. 6. 어음금액 1,000만 원, 만기일 2013. 3. 20. 수취인 피고 영우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영우와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이하 '우당기술산업'이라 한다)이 위 어음에 각 배서한 사실, 원고는 2013. 3. 20. 우당기술산업에게 어음금액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에스에이치바이오에 대하여 201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6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3. 11.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에스에이치바이오는 2014. 10. 24. 위 법원 2014하합162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어음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이고 이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고서면에서 에스에이치바이오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에스에이치바이오는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위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 채권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비록 파산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및 권리변경 등의 법적 효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57438 판결 등 참조), 에스에이치바이오가 악의로 위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영우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영우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파산자 에스에이치바이오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영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강동훈

판사박예지

별지